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공고개요

### 가. 추진목적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청지역(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건\* 사전검토 필요**

\* 사업신청 기본요건 : ①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권원 확보, ② 대응자금 재원 마련  
③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지역

- 이에, 본공모('26년) 공고에 앞서 **예비공모('25년)를 실시하여 사업 신청지별 기본요건검토 및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를 확인**  
**(※ 요건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본공모 전 보완할 경우, 본공모 참여 가능 단,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

- ① 예비공모 및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및 결과안내(~'25.12월 중\*)

\* 단, 요건검토 및 결과발표 일정은 변동 가능

### 나.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다.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 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 단일 업종의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 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자체
  - 신청 집적지구 내에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
-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가능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집적지의 클러스터화 전환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으로 소공인 혁신기반 조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 및 지정 요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9조)

가.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 행정구역별 기준 >**

행정 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인 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인 이상(업체 수)
군의 읍·면	20인 이상(업체 수)

나.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지정받으려는 지역,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등) 수립

## 나. 지원규모 : 1개소 내외\*

\* 1개소 25억원 이내이며, 기존 집적지구 내 복합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역 제외

##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구축예정일+3년 까지

\* 사업기간은 공간조성 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2차년도 내 구축**

\*\*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구축 후 3년 이상이며, 구축 지연 시 자동연장

##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마. 지원내용

-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 (복합지원센터) 센터 구축비를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 (구축비)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등)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비, 스마트 장비 위주
    - \* 건물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이며 부지매입비는 국비 사용 불가,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은 지자체 부담

### <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예시)>

- ① (공용장비)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 ② (전시·판매장) B2B,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조성
- ③ (교류·창작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조성
- ④ (상생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

## 바. 구축규모

- 연면적 1,000m<sup>2</sup>(약 300평) 내외로 조성
  - 지자체가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 \* 공간구성(예시) : (1층) 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 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 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 \*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등도 가능

### 3

## 신청 및 제출 방법

가. 신청기간 : '25. 9. 22(월) ~ 11. 14(금) 18:00

나. 제출방법 : 온나라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고, **원본서류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보내실 곳 :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비고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참고)
② 지자체 출자 협약서	(서식 2 참고)
③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서식 3 참고)
④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4 참고)
⑤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서	(서식 5 참고)
⑥ 소공인 수요조사서	별도 서식 없음 (소공인 여부 확인필수)

\* 기존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받은 지역의 경우 ①, ②, ③, ⑥만 제출  
(참고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현황)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만을 신청하는 경우, ④, ⑤, ⑥만 제출

### 4

## 요건검토 계획

가. 검토내용 : 사업추진 기본요건 검토 및 적부\* 판정

(※ 요건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시 본공모 전 보완할 경우, 본공모 참여 가능)

나. 기본요건 : ①사업부지 확보 증빙 및 ②대응자금 투자자금 조달 계획,  
③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지역

①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중 택1

② 대응자금 납입확약서

다. 추진일정 : 예비공모 공고 ('25.9.22.) → 신청·접수 (~'25.10.31.) → 요건  
검토 및 결과 안내 (~'25.12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 및 검토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5년도 예산현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5

### 평가 및 선정 절차

- ① (요건검토) 제출된 기본요건\* 검토 및 본공모 참여 적합 여부 판정  
\*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대응자금(지방비) 확보 계획 등
- ② (결과발표) 요건검토 결과 및 본공모 참여 가능 여부 발표  
\* 요건검토 결과 및 본공모 참여 가능여부는 개별안내 예정

## 6

### 기타사항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 사업계획 필수 반영
- 지자체는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 토지 이용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등이 필요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 등)과 관련하여 소공인 수요, 산출근거 등에 대한 자료(공청회, 수요조사서 등) 필수 반영
- 사업계획서 내 장비도입위원회 계획 필수 반영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7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예비공모를 고려하여 본공모 접수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 필요
- 본공모 시,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컨설팅 등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므로 본공모 전 사전 준비 필요

## 8

## 문의처

문의처	전 화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82 044-204-7883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042-363-7908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 서식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지자체 출자 협약서
  3.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계획 및 증빙
  4.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5.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서

**서식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공모 신청서				
지자체명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명		연락처	(사무실) (e-mail)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e-mail)
지역 특화업종 현황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업종명(업종코드)		
	소공인 수	지자체 내 해당업종 소공인 수		
	신청 집적지(구) 현황	행정구역	읍,면,동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업종명(업종코드)	
	소공인 수	신청 집적지(구) 내 해당업종 소공인 수		
복합 지원센터 구축 예정지	주소			
	구축 규모(연면적)	ex) 4층, 5층(1000㎡)		
	건립연도		건물용도	현재 또는 이전 용도
사업예산	국고보조금	지방비		합계
		광역	기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p>2026년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공모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p>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자체 출자 확약서 3.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4.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계획서(2p이내)

## □ 지역 특화업종 현황

- 집적지 제조업 현황, 문제점, 집적지 현황(소공인수), 소공인 현황(실태 등)등 지역특화 업종 현황 작성
- 집적지구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 □ 복합지원센터 추진 필요성

- 해당 지자체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운영조직 구성, 운영전략, 비즈니스 모델발굴, 기타 차별화 방안 등
- 기타 차별화 된 운영지원계획과 집적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 등 자유롭게 기재

## □ 사업 관리 계획

- 별도의 운영기관 선정, 전문부서(건축) 발주 등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 협의결과 등

##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민간	소계
1년차	구축비					
	운영비					
2년차	구축비					
	운영비					
총계	구축비					
	운영비					

**서식2** 지자체 출자 확약서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지방비 출자 확약서**

<b>신청기관</b>			
<b>사업기간</b>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b>확약내용</b>			
1. 사업명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2. 확약금액			
(단위 : 원)			
	<b>광역지자체</b>	<b>기초지자체</b>	<b>총계</b>
구분 금액(원)			
3. 출자 시기 : <i>대응출자(20xx.xx), 운영출자(20xx, 20xx 연차별 출자 가능)</i>			
<p>우리 ○○광역시·도는 위와 같이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이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right;">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right;">_____ <b>시·도지사</b> : (직인)</p> <p style="text-align:right;">_____ <b>시군구청장</b> : (직인)</p> <p style="text-align:center;"><b>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b></p>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중 택1  
스캔본 이미지 삽입

# 서식4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신청서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 지정 [ ] 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0일
------	-----	------	-----

신청 기관	지자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집 적 지 구 개 요	집적지구 명 칭		
	구역지번 및 면적	지번	
		대지(㎡)	건물(㎡)
		소공인작업장 분포면적(㎡)	소공인 수(개)
	집 적 지 구 명 칭(업종)		
	지 정 목 적		
활성화 시책 수립여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집적현황(용역결과서 대체가능) 2.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용역결과서 대체가능) 3.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3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서(서식5 별첨) *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포함 4. 소공인 수요조사서(용역결과서 대체가능)	수수료 없음
------	--	-----------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

**1. 집적지구 지정 필요성**

집적지구 내 도시형소공인의 실태조사서

해당 집적지구에 포함된 도시형소공인의 개요	※ 대상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지도 등 첨부
집적지구 토지의 용도·지역	
관내 소공인의 집적현황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실태	※ 집적지구 소공인 수(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코드 표시) ※ 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 집적지구의 기준) 요건 충족

대상 집적지구의 집적현황

대상 집적지구의 집적현황	※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인구, 산업, 상업, 토지이용 현황, 공간 등 대상 구역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인구변화 등 대상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

□ 산업입지 수급계획과의 조화

<b>산업입지 수급계획과의 조화</b>	※ 산업단지 포함 여부 ※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성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참고
-------------------------------	--

□

- 집적지구 지정 사유를 기술하고, 필요성 서술
-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청한 집적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해당 구역이 집적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중심으로 기술
- 최근 3개년 간 매출액 변동사항, 종사자 규모, 유동인구 등 기초특성을 파악하여, 집적지구 변동에 대해 기술

## 2. 집적지구 경계도



구 분	내용
위 치	**시 **동 ** 일대
총 합 위치도	※ 집적지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도, 위성지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
면 적	
특 성	※ 집적지구의 특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

### 3.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

#### □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추진주체	
위치도	
계획기간	
예산규모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 □ 집적지구 활성화 운영계획(3개년)

구분	연차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1차년도 (20**년)	○ ○	※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구성
2차년도 (20**년)	○ ○	
3차년도 (20**년)	○ ○	※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구성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을 계획한 연차별로 사업명, 추진주체, 사업내용, 계획기간, 사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추진방향의 우수성이 부각되도록 작성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과 연계한 사업 중심으로 작성(지자체에서 출자한 예산 활용)

□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세부 프로그램을 각 항목별, 세부진행사항, 세부 프로그램 예산, 운영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 

□ 집적지구 활성화 추진전략

- 집적지구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행가능한 전략을 각 부문별로 제시할 것
- 해당 집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 간의 협업화, 조직화 방안 기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업종 고도화, 집적지 환경 변화 대응 등)이 부각되도록 작성

□ 집적지구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

- 집적지구 내 이동식 방문 클리닉, 보건소, 이동식 도서관, 구내식당,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등

## 4. 성과목표 및 파급효과

### □ 집적지구 지정의 정량적 목표

수치목표	현 황	1차 목표년도	2차 목표년도	3차 목표년도	최종
예) 소공인 수	0000명				

- 집적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성과목표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제시할 것

### □ 집적지구 지정의 정성적 목표

- 집적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에 따른 정성적 목표(예시 :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를 사업추진 유관한 효과를 제시할 것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 5.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 □ 연차별 소요자원 규모

구분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민간	소계
1차년도	구축비						
	운영비						
2차년도	구축비						
	운영비						
3차년도	구축비						
	운영비						
총계	구축비						
	운영비						

### □ 조달방안

- 3년간 집적지구 활성화 재원 조달계획을 국비·지방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참고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송인제1동, 송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7		○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부산광역시	○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인천광역시	○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		○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9	대구광역시	○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0		○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1		○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2	광주광역시	○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경기도	○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5		○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6		○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7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9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0		○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2		○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3		○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4		○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5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7		○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	대전광역시	○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강원도	○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1		○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2		○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3		○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	충청북도	○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5	충청남도	○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6		○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47		○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8	전라북도	○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0		○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1	전라남도	○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2	경상북도	○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3		○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4	경상남도	○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5		○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